

행 정 민 원 과

주 요 사 업

1.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
2. 다함께 배우는 선산시민대학 운영
3. 시민 눈높이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
4.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
5.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

주요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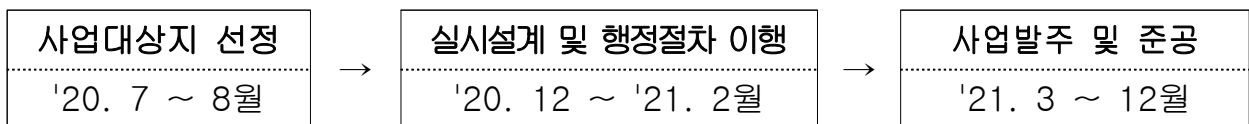
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

- 비법정 도로, 구거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 제공 및 농업경영규모 확대
- 마을단위 주민숙원 해결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- 위 치 : 읍·면 지역
- 사업량 : 203건(비법정도로 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)
- 사업비 : 4,954백만원

□ 추진계획



- 설계방법 :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
※ 읍면 합동설계 실시로 업무교류 및 설계능력 배양(청렴교육 실시)

□ 선정 절차

- '20. 7~8월 : 마을별 개발위원회 사업대상지 선정(읍면 주민)
- '20. 8~9월 : 선정위원회 사업대상지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(읍면사무소)
- '20. 9~12월 : 사업대상지 최종 검토 및 예산 수립(행정민원과)

□ 기대효과

-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확장으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 제공, 정주여건 확충에 기여
- 배수로 정비를 통해 우천 시 농경지 피해 및 재해 예방

2 다함께 배우는 선산시민대학 운영

- 도농 복합도시의 다양한 마을 역사와 인문학 강의를 통해 선산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적 다양성 확립
 -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성화 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
-

□ 사업개요

- 운영기간 : 2021. 4 ~ 6월, 9 ~ 11월 (6개월, 주3회, 총60회차)
- 장 소 : 선산문화회관
- 대 상 : 읍·면 지역주민 우선 ※ 수강료 무료
- 사 업 비 : 15백만원
- 교육일정 및 강사 : 별도 ※ 평생교육원 인력 pool 활용
- 내 용
 - 일반강의 : 40회(인문학 일반, 낭독의 즐거움 등)
 - 특 강 : 2회(성공적인 귀농·귀촌 프로젝트)

□ 추진계획

- 추진계획 수립 : '21. 1 ~ 2월
- 강사선발 및 수강생 모집 : '21. 2월, 8월
-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: '21. 4월, 9월

□ 기대효과

-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
-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

3 시민 눈높이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

- 신속하고 친절할 민원 처리를 통한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
 -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
-

□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

- 계절별 화분 비치로 민원실 녹색공간 조성
- 민원인 전용 컴퓨터, 휴게소 등 편의시설 제공
-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: 무인 건강측정 시스템(혈압, 체중계 등)

□ 시민 맞춤형 봉사행정 추진

- 친절할 민원 안내 및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
- One Stop Service 체제 구축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
- 무인민원 발급기 및 제증명 발급 관련 안내

□ 유관기관 및 민원실 협력 체계 구축

- 유관기관 : 구미세무서,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
- 운영시기
 -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 : 매일 9:00 ~ 18:00
 - 구미세무서 : 매주 수요일 9:00 ~ 18:00
- 운영내용 : 국세 및 지적측량 상담

□ 기대효과

- 각종 편의시설, 녹색공간 조성 등 편안한 민원인 쉼터 제공
- 따뜻하고 정감가는 민원 안내를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

4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

- 교통이 불편하고 노약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및 토지이동 신청 접수 처리
 - 고령자 및 노약자가 많은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담과 건강 체크로 시민복지행정 실현
-

□ 추진개요

- 운영기간 : 2021. 1. ~ 12. (월 1회)
- 대상업무 : 지적 측량, 토지이동(토지분할, 합병, 지목변경), 토지거래, 건강체크(혈압, 혈당, 치매진단)
- 순회방문 : 시정소식지 및 마을 앰프방송 이용 사전 홍보

□ 추진방법

- 월 1회 순회 현장방문 처리
 - 관내 주민의 다중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과 장소 선정
 - 현장에 각종 신청서식을 비치하고 민원접수 상담일지 기록
- ※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

□ 기대효과

-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적민원 현장 처리
- 농촌지역 주민 건강상담과 혈압, 혈당, 치매 관련 주민 건강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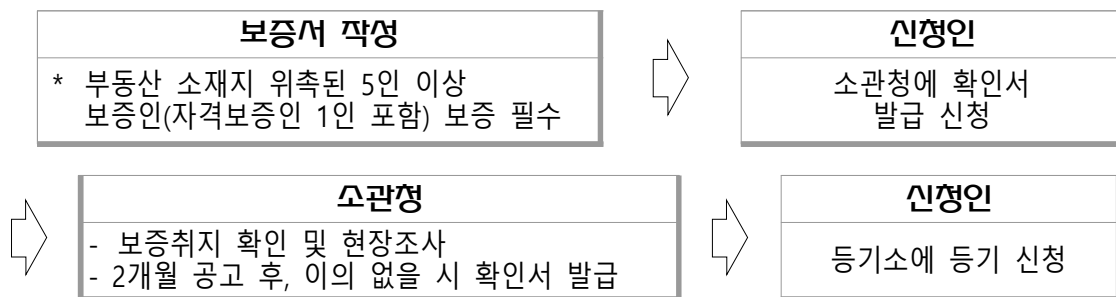
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

- 등기 절차 간소화로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
-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모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 (2년간)
※ 등기신청 : 2023. 2. 6.까지 가능
- 적용대상
 - 1995. 6. 30.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
 - 읍·면 모든 토지 및 건물 (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)
※ 읍·면지역 : 행정민원과 지적민원담당, 동지역 : 토지정보과 지적담당

□ 신청절차



□ 담당별 업무

- 행정민원과 : 보증내역 사실확인조사 및 확인서 발급 처리
- 읍·면장 : 보증인의 인감변경 등 지속적인 보증인 위·해촉 관리
- 보증인(자격·일반) : 신청내용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증(인감날인)

□ 기대효과

-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 해소